

관리번호: A-TM-043

주관부서 : 경영기획

# ESG위원회 규정







---

## 목 차

### 제1장 총 칙

1.1 목적	1-1
1.2 정의	1-1
1.3 적용범위	1-1
1.4 직무와 권한	1-1

### 제2장 구 성

2.1 구성 및 임기	2-1
2.2 위원장	2-1

### 제3장 회 의

3.1 소집권자	3-1
3.2 소집절차	3-1
3.3 결의방법	3-1
3.4 부의사항	3-1
3.5 관계인의 의견청취	3-2
3.6 의사록	3-2
3.7 통지의무	3-2

### 제4장 기 타

4.1 간사	4-1
4.2 규정의 개폐	4-1

### 제5장 부 칙

5.1 시행일	5-1
---------	-----

## 제1장 총 칙

### 1.1 목적

본 규정은 **(주)트리니티항공**(이하 "회사"라 한다.)의 ESG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.)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1.2 정의

“ESG 관련 활동”은 회사 경영 전반에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며, 환경(Environment), 사회(Social), 지배구조(Governance)와 관련한 손실로 인하여 회사에 운영상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 내지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활동을 포함한다.

### 1.3 적용범위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1.4 직무와 권한

1.4.1 위원회는 회사가 E(환경)S(사회)G(지배구조)를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며, ESG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, 쟁점사항을 발굴 및 파악하여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전략 및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토 및 승인한다.

1.4.2 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 단, 이사회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재심의 할 수 있다.

1.4.3 위원회는 ESG 외부평가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과 ESG RISK로 판단되는 사안 그리고 법령에 중대한 위반이 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---

## 제2장 구 성

### 2.1 구성 및 임기

- 2.1.1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.)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에 결의로 한다.
- 2.1.2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.
- 2.1.3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이사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.

### 2.2 위원장

- 2.2.1 위원회는 본 규정 3.3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한다.
- 2.2.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2.2.3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2.2.4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활동내용의 요지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2.2.5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(이하 “직무대행자”라 한다) 단,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 선임 위원,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3장 회 의

### 3.1 소집권자

3.1.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본 규정 2.2.5에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3.1.2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주일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3.2 소집절차

3.2.1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을 정하여 늦어도 회의일 직전일까지 위원 각자에 대하여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
3.2.2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3.2.1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 3.3 결의방법

3.3.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3.3.2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/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### 3.4 부의사항

3.4.1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3.4.1.1 ESG 경영을 위한 기본 정책 및 전략 등의 수립

3.4.1.2 ESG 중장기 목표 심의 및 승인

3.4.1.3 ESG 관련 활동의 구체적 실행 계획 심의 및 승인

3.4.1.4 ESG 위원회 위원장 선임

3.4.1.5 ESG 관련 중대한 리스크 발생 및 대응에 관한 사항

3.4.1.6 ESG 관련 규정 제·개정

3.4.1.7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3.4.2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3.4.2.1 ESG 경영 활동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진행사항

3.4.2.2 ESG 경영 활동에 대한 이행 성과 및 결과보고

3.4.2.3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### 3.5 관계인의 의견청취

3.5.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3.5.2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### 3.6 의사록

3.6.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3.6.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# 3.7 통지의무

3.7.1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사회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3.7.2 3.7.1에 따라 통지 후 일부 이사로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 개최 후 이사회에서 재결의한다.

---

## 제4장 기 타

### 4.1 간사

4.1.1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
4.1.2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, 회의의 소집통지, 의사록 작성 및 보관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한다.

### 4.2 규정의 개폐

4.2.1 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---

## 제5장 부 칙

### 5.1 시행일

5.1.1 본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로 제정, 시행한다.

5.1.2 본 규정은 2025년 6월 27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

5.1.3 본 규정은 2026년 5월 12일부로 개정, 시행한다.